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전수조사표

G7_대학교

2013. 5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1. 매개시설

평가기준

모든 이용자가 해당시설물의 대지경계선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접근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1.1 주출입구 접근로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1	해당시설에 주출입구 접근로가 있는지?

▶ 1.1.1.1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대상시설 해당 여부	해당 (1) (→ 1.1.2 항목부터 시작)	비해당 (2) (→ 1.2 주차구역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2	해당건물 내 보도 및 접근로의 바닥재질과 마감상태는 보행 장애인에게 적절한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2.1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마감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넘어질 염려 없음	미끄러우나 넘어질 염려 없음	미끄러운 재질로 마감
▶ 1.1.2.2 바닥면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보도블럭, 아스팔트 등 2cm이하로 틈새없이 평탄하게 마감	보도블럭, 아스팔트 등 2cm이하이며 평탄하지 않거나 2cm초과하며 평탄하게 마감	자갈 및 모래 등으로 틈새가 2cm초과하고 평탄하지 않음
▶ 1.1.2.3 이음새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2cm이하		높이차 없으며, 격자구멍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 다만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적정으로 봄	높이차가 있거나 격자구멍 또는 틈새의 한 방향이 2cm초과	높이차 있으며, 격자구멍 또는 틈새의 양방향 2cm초과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3	보도 및 접근로의 유효폭과 기울기는 '편의증진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3.1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일부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미만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미만
▶ 1.1.3.2 보도 등의 진행방향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 이하	일부 구간 접근로 기울기가 1/12 ~ 1/18초과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2초과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4	휠체어 등 보행자를 위해 보행안전통로는 확보되어 있으며 연속성이 있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4.1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경계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공작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분 설치)		보행통로와 차도에 공작물 또는 경계석 등이 설치됨 ※ 이동식화분 설치시는 적정	보행통로용 안전선만 색상 표기 ※ 라바콘 설치시는 미흡	보행통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음
▶ 1.1.4.2 접근보행통로에 차량, 안내판, 가로수, 화분 등의 보행 장애물이 없어야 함		대지경계선 내 모든 보행 통로에(폭 1.2m이상) 장애물이 없음 ※ 이동식 장애물인 경우 적정에 포함	대지경계선 내 일부 구간 보행통로(폭 1.2m미만)에 장애물이 있음	대지경계선 내 모든 구간에 안전보행통로 없이 차량과 같은 레벨에서 접근함

※ 보행자 접근시 차량과의 교차동선이 없는 경우는 안전보행통로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5	주출입구 접근로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1.1.5.1 주출입구 접근로에 점자블록 설치여부	유 (1) (→ 1.1.6 항목부터 시작)	무 (2) (→ 1.2 주차구역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6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6.1 점자블록 형태 (주출입구와 대지경계선까지의 연계)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1.1.6.2 설치위치	전체구간 주출입구와 최단거리로 설치	설치는 되어 있으나 보행안전통로와 상관없이 차도 등에 설치	미설치
▶ 1.1.6.3 시공방법	바닥마감재와 동일하게 마감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미설치

1.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2.1	해당시설에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지?

▶ 1.2.1.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여부	유 (1) (→ 1.2.2 항목부터 시작)	무 (2) (→ 1.3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2.2	주차장의 설치위치, 크기 및 수는 적절한가?

▶ 1.2.2.1 대상시설 총 주차 대수 (실제 설치된 주차 대수 기준)	()대
▶ 1.2.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총 주차 대수	()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2.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	규정비율의 100%이상	규정비율의 100%미만	미설치
▶ 1.2.2.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 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주차 후 주출입구 또는 부 출입구 가장 가까운 주차 구역에 설치	주차 후 주출입구 또는 부 출입구로 접근가능하다는 표시(경사로 표시 등)가 있 으나, 출입구로부터 다소 거리가 있음	
▶ 1.2.2.5 크기는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평 행주차인 경우 폭 2m이상, 길이 6m 이상)의 주차공간의 확보	모든 주차면이 규정 크기 준수	일부 주차면이 규정 크기에 미달	모든 주차면이 규정 크기 미달
▶ 1.2.2.6 주차공간 바닥마감의 적정성	전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또는 평탄하지 않은 마감	잔디블록 등 2cm초과의 틈새로 인해 휠체어 이동 곤란

※ 장애인주차구역이 10대 미만인 경우 기록지에 해당없음 표기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2.3	주차구역의 표시, 유도, 안내표시는 적절하며 주출입구까지의 안전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2.3.1 장애인전용주차장 바닥표시 및 입식 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바닥 및 입식표시 규격에 맞게 모두 적정 설치, 안내표지내용 적정 기재	바닥 또는 입식표시 중 한 가지만 적정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없음
▶ 1.2.3.2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안전통행로 확보	모든 구간에 폭 1.2m이상 안전보행통로가 연속적으로 설치	안전보행통로 일부구간이 1.2m미만	모든 구간에 별도의 안전보행통로 없음

1.3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1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형태는?

▶ 1.3.1.1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설치형태	단차 없음(1) (주출입문 앞까지 단차없음)	계단+경사로(2) (주출입문 앞까지 계단과 경사로를 병행하여 설치)	계단(3) (주출입문 앞까지 계단만 설치)
--------------------------------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2	해당시설의 주출입구는 휠체어사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접근이 가능한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3.2.1 해당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는 2cm이하가 되고 주출입문까지의 휠체어 등의 접근 가능 여부	2cm이하의 단차, 또는 그 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12이하 설치	2cm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12초과 설치	2cm를 초과하는 단차만 있음
▶ 1.3.2.2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이 1.2m이상 설치	단차 없이 접근, 또는 경사로 참(1.5m×1.5m)과 출입구전면의 연결 접근 공간 폭이 1.2m이상	출입구 전면의 연결접근 공간 폭이 1.2m미만 또는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이면서 전·후면 활동공간이 1.5m×1.5m 미만인 경우	-
▶ 1.3.2.3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0.75m초과 휴식참 설치	미설치
▶ 1.3.2.4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며, 평탄함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며 평탄하지 않거나, 또는 바닥이 미끄럽거나 평탄하게 설치	바닥이 미끄럽고 평탄하지 않음
▶ 1.3.2.5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모든공간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일부공간 1.5m×1.5m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활동공간 미확보
▶ 1.3.2.6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양측면에 손잡이의 연속 설치	손잡이 양측면에 연속 설치	손잡이 한쪽 면에 연속 설치	미설치
▶ 1.3.2.7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손잡이의 높이 적정여부	높이는 0.8 ~ 0.9m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초과	미설치
▶ 1.3.2.8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손잡이의 굵기 적정여부	굵기는 0.032~0.038m	굵기는 0.32m미만 또는 0.38m이상	미설치

※ 경사로이 길이가 1.8m미만이거나 높이가 0.15m미만인 경우에는 손잡이 해당항목(1.3.2.6부터 1.3.2.8까지) 모두 적정으로 표기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3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는가?

▶ 1.3.3.1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 점자블록이 설치여부	유 (1) (→ 1.3.4 항목부터 시작)	무 (2) (→ 2.1 내부시설 항목부터 시작)
--------------------------------------	----------------------------	-------------------------------

※ 계단과 경사로가 함께 설치된 경우이면서 점자블록을 경사로쪽에만 설치한 경우에는 유(1)로 표기하고 1.3.4.1부터 1.3.4.3까지는 미설치로 표기하여야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4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3.4.1 점자블록 형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1.3.4.2 설치위치		단차가 있는 전체구간에 점형블록을 설치	단차가 있는 일부구간에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1.3.4.3 시공방법		바닥마감재와 동일하게 마감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미설치

※ 주출입문의 단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음

2. 내부시설

평가기준	모든 시설은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수평 및 수직이동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2.1 출입구(문)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1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은 전·후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유효폭, 구조, 턱낫추기 등이 적정한가?

※ 주출입문으로 단차제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출입문으로 단차제거가 된 경우에는 부출입문을 주출입문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음. 다만, 지형 구조상 불가피하게나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인정함.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1.1.1 주출입문의 높이차이 여부		주출입문에 단차 없거나, 단차 2cm이하		주출입문과 부출입문의 단차가 2cm 초과
▶ 2.1.1.2 주출입문 통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주출입문의 유효폭이 0.8m이상		주출입문의 유효폭이 0.8m미만
▶ 2.1.1.3 주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이상 확보		주출입문을 연 후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주출입문과 부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가 1.2m미만 (문이 닫힌 상태에서 1.5mx1.5m 이상 활동 공간 확보 정도)	전·후면 유효거리 미확보
▶ 2.1.1.4 주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설치		높이 0.8~0.9m 사이에 손잡이 설치 (자동문 포함)	높이 0.8m미만 또는 0.9m초과 위치에 손잡이 설치	수동문인 경우이면서 손잡이가 없음
▶ 2.1.1.5 주출입문 손잡이 형태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자동문포함)	돌림형 손잡이 (동근형 손잡이)	수동인 경우면서 손잡이 없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2	주출입문에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는가?

▶ 2.1.2.1 주출입문에 점자블록이 설치여부	유 (1) (→ 2.1.3.1 항목부터 시작)	무 (2) (→ 2.1.4.1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3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1.3.1 점자블록 형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2.1.3.2 설치위치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0.3m 이격해서 문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0.3m 이격하지 않거나 또는 문폭만큼 점형블록 설치하지 않음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4	해당시설 일반출입문의 활동공간, 유효폭, 구조, 턱낮추기 등이 적절한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1.4.1 출입문턱의 높이 차이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일부 문의 단차 2cm초과	모든 문의 단차 2cm초과
▶ 2.1.4.2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이상 확보 여부		모든 문의 유효폭이 0.8m이상	일부 문의 유효폭이 0.8m미만	모든 문의 유효폭이 0.8m미만
▶ 2.1.4.3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이상 확보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일부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미만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미만
▶ 2.1.4.4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의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설치여부		모든 손잡이(레버식)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	일부 손잡이(레버식) 바닥면으로부터 0.8m미만 이거나, 0.9m초과하여 손잡이(레버식) 설치	미설치
▶ 2.1.4.5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의 출입문에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출입문 손잡이 쪽 벽면에 점자표지판 중심을 기준으로 1.2~1.5m 높이에 설치된 경우 ※ 복도손잡이 있는 경우 손잡이에 설치시 적정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은 사무실, 민원실 등이며 창고나 MDF실 등은 포함되지 않음

2.2 복도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2.1	해당시설 복도의 유효폭, 턱낮추기, 손잡이 설치, 단차해소는 적정하며 시각장애인의 유도에 장애는 없는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2.1.1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함		모든 복도의 유효폭이 1.2m이상	일부 복도의 유효폭이 1.2m이상	모든 복도의 유효폭이 1.2m미만
▶ 2.2.1.2 복도 바닥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2cm이하 단차, 또는 경사로를 1/12이하 설치 (또는 승강설비 설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12초과 설치	2cm초과의 단차만 있음 (계단 등)
▶ 2.2.1.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였는가? 2.1m이내 장애물 있는 경우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여부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6m이하에 보호벽, 난간 설치 또는 장애물 없음 ※ 화분설치시나 바닥재질 및 색상을 달리한 경우 적정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에 재질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접근을 경고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으나 아무런 접근방지 장치가 없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2.2	현재 조사대상시설이 장애인전용시설인가?

▶ 2.2.2.1 장애인전용시설 여부	해당 (1) (→ 2.2.3 항목부터 시작)	비해당 (2) (→ 2.3 해당시설 층수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2.3	장애인전용시설 복도의 손잡이 적정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2.3.1 복도 측면에 손잡이 연속설치		복도 측면에 손잡이 연속설치	복도 측면에 부분적으로 손잡이설치	미설치
▶ 2.2.3.2 손잡이 지름 0.032~0.038m사이 설치		손잡이 지름 0.032~0.038m사이 설치	손잡이 지름 0.032m미만 또는 0.038m초과	미설치
▶ 2.2.3.3 손잡이 설치높이 0.8~0.9m사이 설치		손잡이 설치높이 0.8~0.9m사이 설치	손잡이 설치높이 0.8m미만 또는 0.9m초과	미설치

2.3 해당시설 층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3.1	현재 조사대상시설은 몇 층 건물입니까?

▶ 2.3.1.1 대상시설이 1층 이거나 2층 이상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직이동 설비의 조사 가능 여부	1층 (1) (→ 3.1 위생시설 항목부터 시작)	2층 이상 (2) (→ 2.4.1 항목부터 시작)
--	--------------------------------	--------------------------------

2.4 계단 또는 승강설비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1	수직이동 수단으로 계단 또는 경사로, 리프트, 엘리베이터 중에서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 중 어느 것이 설치되어 있는가? (복수선택 가능)

▶ 2.4.1.1 대상시설에 설치된 수직이동 수단으로 설치된 설비는 모두 체크	계단 (1) (→ 2.4.2 계단)	경사로 (2) (→ 2.4.3 경사로)	승강기 (3) (→ 2.4.4 승강기)	리프트 (4) (→ 2.4.5 승강기)
--	------------------------	--------------------------	--------------------------	--------------------------

※ 승강기가 의무인 대상시설은 계단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도 반드시 승강기도 함께 조사항목을 체크하여야 하며 만약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강기 모든 항목을 미설치로 표기하여야 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2	계단의 유효폭, 휴식참, 난간의 굽기 및 높이 등은 적절한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4.2.1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일부 계단 및 참의 유효폭 0.9m~1.2m미만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0.9m미만
▶ 2.4.2.2 계단에는 철크면이 설치되어 있음		모든 계단에 철크면 설치		일부 계단에 철크면 미설치
▶ 2.4.2.3 철크면의 높이 0.18m이하로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8m이상 설치		철크면 0.18m이하이며, 디딤판 0.28m이상이며 계단코 3cm이하	철크면, 디딤판, 계단코 3개의 기준중 1~2개 적합	철크면, 디딤판, 계단코 3개의 기준 모두 미흡
▶ 2.4.2.4 계단측면에 손잡이 굽기 0.032~0.038m사이 설치		굽기는 0.032~0.038m	굽기는 0.032m미만 또는 0.038m이상	미설치
▶ 2.4.2.5 계단측면에 높이 0.8~0.9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높이는 0.8 ~ 0.9m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초과	미설치

▶ 2.4.2.6 손잡이 끝부분에 0.3m이상 수평손잡이를 연장설치	끝부분 0.3m이상 수평손잡이 설치	끝부분 0.3m미만 수평손잡이 설치	미설치
▶ 2.4.2.7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중간 참 포함) 0.3m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계단의 일부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2.4.2.8 손잡이에 점자표기	모든 층 설치	일부 층 설치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3	실내 수직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휴식참, 난간(손잡이), 안내 등은 적절한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평가세부내용			
▶ 2.4.3.1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전체구간의 경사로 유효폭이 1.2m이상	일부구간의 경사로 유효폭이 0.9m~1.2m미만	전체구간 경사로 유효폭이 0.9m미만

※ 1998년 4월 11일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경우 0.9m까지 경사로 유효폭 완화 (적정으로 표기)

▶ 2.4.3.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0.75m초과 휴식참 설치	미설치
▶ 2.4.3.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이하 설치	전체 1/12이하	1/8이하 ~ 1/12초과	전체 1/8초과
▶ 2.4.3.4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며, 평탄함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며 평탄하지 않거나, 또는 바닥이 미끄럽거나 평탄하게 설치	바닥이 미끄럽고 평탄하지 않음
▶ 2.4.3.5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모든공간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일부공간 1.5m×1.5m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활동공간 미확보
▶ 2.4.3.6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양측면에 손잡이의 연속 설치	손잡이 양측면에 연속 설치	손잡이 한쪽 면에 연속 설치	미설치
▶ 2.4.3.7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손잡이의 높이 적정여부	높이는 0.8 ~ 0.9m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초과	미설치
▶ 2.4.3.8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손잡이의 굵기 적정여부	굵기는 0.32~0.38m	굵기는 0.32m미만 또는 0.38m이상	미설치

※ 경사로이 길이가 1.8m미만이거나 높이가 0.15m미만인 경우에는 손잡이 해당항목 (2.4.3.6부터 2.4.3.8까지 모두 적정으로 표기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4	승강기는 유효한 바닥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에 적정한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평가세부내용			
▶ 2.4.4.1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전면 1.4×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전면 1.2×1.2m~1.4×1.4m 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전면 1.2×1.2m 미만의 활동공간
▶ 2.4.4.2 대상시설 신축연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여부	2008.1.1 이전 신축 (1) (→ 2.4.4.3 다음 항목으로)	2008.1.1 이후 신축 (2) (→ 2.4.4.4 항목으로)	

▶ 2.4.4.3 (2008.11 이전)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	폭 1.1m이상이며 깊이 1.35m이상	폭 1.1m미만이거나 또는 깊이 1.35m미만,	폭 1.1m미만이며 깊이 1.35m미만,
▶ 2.4.4.4 (2008.11 이후)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35m이상	폭 1.6m이상이며 깊이 1.35m이상	폭 1.6m미만이거나 또는 깊이 1.35m미만	폭 1.6m미만이며 깊이 1.35m미만
▶ 2.4.4.5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	우측면에 가로형 조작반 설치(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 좌·우측 구분안함)		미설치
▶ 2.4.4.6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 조작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내외로 설치	0.8~0.9m에 설치	0.8m미만 또는 0.9m초과	미설치
▶ 2.4.4.7 승강기 내부의 일반조작반은 조작설비는 버튼식으로 설치	조작설비는 누름 버튼식	버튼식이 아닌 경우	
▶ 2.4.4.8 승강기 내부의 일반조작반은 일반조작반층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부착	일반조작반 점자표지부착 (병행포함)		일반조작반 점자표지 미부착
▶ 2.4.4.9 점자블록 형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2.4.4.10 설치위치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 0.3m 이격하여 설치	승강기 출입문 전면에 설치	미설치
▶ 2.4.4.11 승강기 외부에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등, 엘리베이터 도착음 동작	전체 설치(작동) 유	일부 설치(작동)	전체 미설치(작동)
▶ 2.4.4.12 승강기 내부에 도착층, 운행상황을 표기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토글(문개폐, 층정보, 운행방향) 설치	전체 설치(작동) 유	일부 설치(작동)	전체 미설치(작동)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5	휠체어리프트는 유효한 바닥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에 적정한가?

평가 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4.5.1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상부와 하부 모두에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상부와 하부 1.2×1.2m ~ 1.4m×1.4m미만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계단의 상부와 하부 모두에 1.2m× 1.2m미만의 승강장 확보
▶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1.2m이상	경사형 또는 수직형 바닥면적 기준 이상	폭 또는 길이(또는 깊이)가 기준 미달	폭과 길이(또는 깊이) 모두 기준미달
▶ 2.4.5.3 호출벨, 작동설명서, 비상정지장치, 과속제한장치, 내부잠금장치, 지정장소 보관의 경우 0.6m이내 돌출	모든 항목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1개 이상 항목이 설치기준에 미달	모든 항목 기준 미달

3. 위생시설

평가기준

위생시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1 일반사항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1.1	해당시설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대변기)이 남·여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3.1.1.1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 설치	남·여 각 1개 이상 설치 ※층간으로 남·여 구분된 것은 적정	남·여 공용으로 설치	설치되어 있지 않음
▶ 3.1.1.2 일반화장실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설비 유무	색상 및 문자로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며 식별이 용이함	색상 또는 문자 사용여부를 표시하고 있으나 구분하기 어려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3.1.1.3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접근통로 폭이 1.2m이상	접근 통로 폭이 0.9m ~ 1.2m미만	접근 통로 폭이 0.9m미만
▶ 3.1.1.4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 칸의 단차포함)가 2cm이하	단차 2cm이하 단차	-	단차 2cm초과
▶ 3.1.1.5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여부	영유아용거치대 1곳 이상설치	-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1.2	화장실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3.1.2.1 화장실에 점자블록 설치여부	유 (1) (→ 3.1.3 항목부터 시작)	무 (2) (→ 3.2 대변기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1.3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3.1.3.1 점자블록 형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3.1.3.2 설치위치	남·여 각각의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에 점자블록을 0.3m전면에 설치	일반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나 입구를 찾기 어려운 경우 또는 장애인화장실 출입구에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3.2 대변기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2.1	휠체어사용자 이용가능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 3.2.1.1 휠체어사용자 이용가능 화장실 설치여부	유 (1) (→ 3.2.2 항목부터 시작)	무 (2) (→ 3.3 소변기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2.2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구조, 화장실의 크기, 위생기기의 설치위치가 휠체어 등의 접근과 이동에 적절한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3.2.2.1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형태	자동문, 박여닫이, 미닫이, 접이문 (안여닫이인 경우 내부공간 확보)	잠금장치 있는 주름문	안여닫이 출입문 형태로 내부공간 미확보, 또는 잠금장치 없는 주름문
▶ 3.2.2.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문의 유효폭이 0.8m이상		문의 유효폭이 0.8m미만
▶ 3.2.2.3 대상시설 2005년 12월 30일 이후 허가 신청된 신축건축물 여부	2005.12.29 이전 건축물 (1) (→ 3.2.2.4 다음 항목으로)	2005.12.30 이후 건축물 (2) (→ 3.2.2.5 항목으로)	
▶ 3.2.2.4 (2005.12.29 이전 기존 건축물인 경우) 바닥면 크기가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바닥면 크기가 폭 1m이상이며 깊이 1.8m이상	폭 또는 깊이중 하나만 적합	폭과 깊이 모두 부적합
▶ 3.2.2.5 (2005.12.30 이후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이며, 깊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으로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가능함	폭 또는 깊이중 하나만 적합	폭과 깊이 모두 부적합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2.3	대변기의 형태 및 보조손잡이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3.2.3.1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	양변기이고 좌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4 ~ 0.45m	양변기이고 좌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4m미만 또는 0.45m초과	양변기가 아님
▶ 3.2.3.2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설치높이는 0.6~0.7m이며 벽측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	설치높이 및 중심위치 중 1개만 기준에 적합	수평손잡이가 없음
▶ 3.2.3.3 대변기의 한쪽옆에는 수직손잡이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있으며 손잡이 길이는 0.9m이상 (ex: L자형 손잡이)	길이는 0.9m미만 또는 바닥면에서 부터 고정되어 설치	수직손잡이가 없음
▶ 3.2.3.4 다른 쪽 손잡이의 회전식으로 설치 여부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전식 (상·하 또는 좌·우)	다른 쪽 손잡이는 고정식	다른 쪽 손잡이 없음
▶ 3.2.3.5 대변기세정장치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식 또는 바닥 및 벽누름버튼식 설치	측면 레버식 또는 버튼식 설치 (수조형)	후면 레버식또는버튼식 설치

3.3 소변기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3.1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사용 가능한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 3.3.1.1 일반화장실 내부에 소변기 설치여부	유 (1) (→ 3.3.2 항목부터 시작)	무 (2) (→ 3.4 세면대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3.2	일반화장실 내부 소변기의 구조, 손잡이 등의 설치는 적정한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3.3.2.1 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 으로부터 0.8~0.9m	높이는 0.8~0.9m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초과	수평손잡이 미설치
▶ 3.3.2.2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길이 0.5~0.6m	길이는 0.5m미만 또는 0.6m초과	수평손잡이 미설치
▶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0.55~0.65m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0.55m미만 또는 0.65m초과	수평손잡이 미설치
▶ 3.3.2.4 소변기의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 으로부터 1.1~1.2m로 설치	높이는 1.1~1.2m	높이는 1.1m미만 또는 1.2m초과	수직손잡이 미설치
▶ 3.3.2.5 소변기의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벽면으 로부터 0.25m내외	길이는 0.2~0.3m	길이는 0.2m미만 또는 0.3m초과	수직손잡이 미설치

4. 안내시설

평가기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시설접근 및 이용, 긴급시 피난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유도 및 안내표시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	--

4.1 유도 및 안내설비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1.1	유도 및 안내설비로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중 어느 것이 설치되어 있는가? (복수선택 가능)

▶ 4.1.1.1 대상시설에 설치된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중 설치된 설비는 모두 체크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 (1) (→ 4.1.2.1 항목으로)	음성안내장치 (2) (→ 4.1.2.4 항목으로)	모두미설치 (3) (→ 4.2 항목으로)
--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1.2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대상건축물의 접근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해당시설을 접근하고 이용하 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유도 및 안내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4.1.2.1 시각장애인이 해당시설의 방의 배치 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 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를 병기(나란히)하여 표기하거나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일반안내판만 설치	미설치
▶ 4.1.2.2 설치규격	점자안내판 중심점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또는 벽면형인 경우 1.0m~1.5m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 4.1.2.3 점자표기방식	타공방식으로 제작 (부식형 제외)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 4.1.2.4 시각장애인이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방의 배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음성 안내장치의 설치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있으며 특수신호장치로 작동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었으나 특수신호장치로 작동되지 않음	미설치
▶ 4.1.2.5 음성안내장치의 설치위치	주출입구 점자블록 동선상에 설치하며 설치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1.3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4.1.3.1 점자블록 설치여부	유 (1) (→ 4.1.4 항목부터 시작)	무 (2) (→ 4.2 경보 및 피난설비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1.4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4.1.4.1 점자블록 형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4.1.4.2 설치위치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에 점형블록을 0.3m전면에 설치		미설치

4.2 경보 및 피난설비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2.1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비상시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설비가 잘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4.2.1.1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 (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떨어짐	경보·피난설비 미설치
▶ 4.2.1.2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 (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 (경광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다소 떨어짐	경보·피난설비 미설치